

의정부지방법원 2022. 7. 19 선고 2021나200465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

재판경과

의정부지방법원 2022. 7. 19 선고 2021나200465 판결

의정부지방법원 2020. 11. 19 선고 2017가단29972 판결

전 문

원고, 항소인 A문중

피고, 피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성

담당변호사 김덕현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심승현

변론종결 2022. 5. 17.

판결선고 2022. 7. 19.

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. 11. 19. 선고 2017가단29972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S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D 임야 1,752㎡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2. 12. 28. 접수 제1489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C이 원고를 대표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대표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은 정당하다.

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아래에서 제2행의 “2005년도 정기총회에서”를 “2015년도 정기총회에서”로, 같은 쪽 아래에서 제3행의 “2003년”을 “2013년”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.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황현찬, 판사 오성우, 판사 박이규